
IV.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해외 사례

본 장에서는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일본, 미국 및 영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1. 일본

가. 보험 모집 행위

일본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일본 보험업법 제2조 제26항),³⁶⁾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일본 금융청(金融庁)의「보험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지침」(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이하 “감독지침”이라 함)에서는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모집 관련 행위’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 금융청의 감독지침에서는 보험업법 제2조 제26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험 모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감독지침 II-4-2-1(1)①).

36) 第二条 26 この法律において「保険募集」とは、保険契約の締結の代理又は媒介を行うことをいう

- ①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保険契約の締結の勧誘)
- ②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를 목적으로 한 보험 상품의 내용 설명(保険契約の締結の勧誘を目的とした保険商品の内容説明)
- ③ 보험계약 신청의 수령(保険契約の申込の受領)
- ④ 기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その他の保険契約の締結の代理又は媒介)

그리고 위 ④의 '기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㉗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 등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나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과 자본 관계를 가지는 경우 등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이 행하는 모집 행위와 일체성·연속성을 추측하도록 하는 사정이 있을 것과 ㉘ 구체적인 보험 상품을 추천·설명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감독지침 II-4-2-1(1)②).

감독지침에서는 '㉗ 및 ㉘의 요건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어서, 모집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모집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 모집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㉗ 및 ㉘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양쪽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도, 즉 구체적인 보수액의 수준과 상품의 추천·설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³⁷⁾

한편 감독지침상 모집 행위의 개념 및 유형과 관련하여 일본손해보험협회가 보험 모집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모집 컴플라이언스 가이드」(募集コンプライアンスガイド)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37) 細田浩史(2016)

〈표 IV-1〉 일본손해보험협회 가이드라인상 모집 행위 유형

항목	모집 행위 유형
1.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1-1	대면·비대면모집을 불문하고, 고객에게 정보 제공이나 행동을 촉구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불문함)
2.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를 목적으로 한 보험 상품의 내용 설명	
2-1	대면·비대면모집을 불문하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상품 내용을 설명(상품 개요의 설명을 포함)하는 것
2-2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팸플릿이나 계약 개요, 주의환기정보의 설명·교부, 보험료의 설명 등을 하는 것
2-3	잠재고객으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문의를 받아 회답하는 것
3. 보험계약 신청의 수령	
3-1	계약신청서의 내용·기재의 설명, 고객으로부터의 고지 수령, 고객으로부터의 서명 또는 날인 획득, 보험료의 수령, 보험료납입영수증의 교부 등을 하는 것
3-2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계약 절차(보험료의 수령, 증명서의 교부)를 진행하는 것
4. 기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	
4-1	<p>잠재고객의 발굴에서 계약 성립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 당해 행위의 평가에 입각하여 다음의 ㉠ 및 ㉡의 요건에 비추어 상기 1항에서 3항에 해당한다고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행위</p> <p>㉠ 모집인이 행하는 모집 행위와 일체성·연속성을 추측시키는 사정이 있을 것</p> <p>㉡ 구체적인 보험 상품의 추천·설명을 하고 있을 것</p>

자료: 日本損害保険協会(2017)

일본손해보험협회 가이드에서는, 위 4-1의 행위 중 ㉠ 요건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나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과 자본 관계를 가지는 경우(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과 출자 관계가 25%를 넘는 경우, 임직원 파견 등의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등)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의 ‘구체적인 보험 상품의 추천·설명을 하고 있을 것’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보험의 내용이나 우위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보험회사명이나 보험 상품·종목명, 대리점명을 제시한 것만 가지고 즉시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다만 일련의 행위 중에서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듯한 의미에서 보험회사명을 알리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험 상품의 추천·설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모집 관련 행위 종사자에게 현금 보수 등을 동반하여 잠재고객을 소개하게 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모집 관련 행위

한편 2015년에 개정된 금융청 감독지침³⁸⁾에서는 ‘모집 관련 행위’(募集關連行為)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실무상 잠재고객의 발굴에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잠재고객의 소개나 비교사이트 운영 등 반드시 ‘모집’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행위를 보험모집인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법규상 기준만으로는 모집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모집 규제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규율할 필요는 없는지도 문제되었다. 넓은 의미에서의 보험 모집 프로세스 중에서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일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자체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만약 보험모집인이 고객을 접촉하기 전의 단계에서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상품에 대하여 부적절한 추천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고객으로 하여금 보험 상품의 내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보험모집인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앞서 형성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집 규제 자체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규율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³⁹⁾

이러한 취지에서 금융청에서는 감독지침을 개정하여 ‘모집 관련 행위’라는 개념을 신설하였다.

38) 2016. 5. 29.부터 시행

39) 細田浩史(2016); 若狹一行(2016. 7. 15); 金融審議會(2013. 6. 7)

1) 모집 관련 행위의 의미

금융청 감독지침상 '모집 관련 행위'란, '잠재고객의 발굴에서부터 계약 성립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에서의 보험 모집 프로세스 중에서 보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감독지침 II-4-2-1(2)). 즉, 넓은 의미에서의 보험 모집 프로세스 중 모집 이외의 부분이라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모집 관련 행위의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 그 이상 적극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금융청 감독지침에서는 '모집 관련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시로서, ① 보험 상품의 추천·설명을 하지 않고 잠재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에게 제공할 뿐인 행위와 ② 비교사이트⁴⁰⁾ 등 상품 정보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서비스 중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으로부터의 정보를 전재(옮겨 신는 것)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구분해서, 업으로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군)만을 잠재고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행위, 또는 비교사이트 등 상품 정보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구체적인 보험 상품의 추천·설명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지시를 받아 행하는 상품안내전단지 등의 단순 배포, 콜센터 오퍼레이터가 실시하는 사무적인 연락 접수나 사무 절차 등에 대한 설명, 금융상품설명회에서의 일반적인 보험 상품의 구조나 활용법 등에 대한 설명,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⁴¹⁾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집 행위 및

40)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등에 관한 희망 조건을 입력하면 복수의 보험회사 상품 간 비교 내용이 표시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의미함, 細田浩史(2016)

41) 이와 관련하여 일본손해보험협회 가이드라인에서는, 광고를 단순히 게재할 뿐인 행위라면 모집 행위 및 모집 관련 행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지만, 만약 해당 광고와 더불어 광고매체 등이 독자적인 견해로서 해당 상품을 추천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집인이 행하는 모집 행위와 일체성·연속성을 추측시키는 사정이 있는지 및 구체적인 보험 상품의 추천·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만약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수액의 수준과 상품의 추천·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 모집 해당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

모집 관련 행위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손해보험협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에 더하여 보험모집인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수지명세표의 기장 업무, 보험료보관계좌의 관리업무, 정산업무, 신청서 부분·보험증권사본 등의 보관업무, 전화의 단순한 연결 업무 등도 모집 행위 및 모집 관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시하고 있다.

〈표 IV-2〉 일본 금융청 감독지침상 모집 행위 및 모집 관련 행위

구분	내용
모집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를 목적으로 한 보험 상품의 내용 설명 • 보험계약 신청의 수령 • 기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 등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나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과 자본 관계를 가지는 경우 등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이 행하는 모집 행위와 일체성·연속성을 추측하도록 하는 사정이 있을 것과 구체적인 보험 상품을 추천·설명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함 <p>〈모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으로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군)만을 잠재고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행위 - 비교사이트 등 상품 정보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구체적인 보험 상품의 추천·설명을 하는 행위
모집 관련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고객의 발굴에서부터 계약 성립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에서의 보험 모집 프로세스 중에서 보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p>〈모집 관련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상품의 추천·설명을 하지 않고 잠재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에게 제공할 뿐인 행위 - 비교사이트 등 상품 정보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서비스 중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으로부터의 정보를 전제(옮겨 싣는 것)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
모집 행위, 모집 관련 행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지시를 받아 행하는 상품안내전단지의 단순 배포 • 콜센터 오퍼레이터가 실시하는 사무적인 연락 접수나 사무 절차 등에 대한 설명 • 금융상품설명회에서의 일반적인 보험 상품의 구조나 활용법 등에 대한 설명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자료: 金融庁(2017)

2) 모집 관련 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

‘모집 관련 행위’의 경우 ‘모집’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해 모집 규제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모집 관련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를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감독청 감독지침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이 제3자에게 모집 관련 행위를 위탁하는 경우의 유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모집 관련 행위 종사자에게 모집 관련 행위를 위탁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은 모집 관련 행위 종사자가 모집 규제 등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진다는 것으로,⁴²⁾ 감독지침에서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이 제3자에게 모집 관련 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모집 관련 행위 종사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① 모집 관련 행위 종사자에 의해 보험 모집이나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 규제의 잠탈로 이어지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② 모집 관련 행위 종사자가 운영하는 비교사이트 등 상품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서비스에 있어서 잘못된 상품 설명이나 특정 상품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 등 보험모집인이 모집 행위를 할 때에 고객이 올바르게 상품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③ 모집 관련 행위 종사자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되는 고객 동의 획득 등의 절차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유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감독지침에서는, 모집 관련 행위 종사자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고객의 소개료나 인센티브 보수(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임)를 받고 잠재고객을 소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보수 체계는 원래는 모집 관련 행위 종사자가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보험 상품의 추천·설명 행위(즉 모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개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모집 관련 행위 종사자에

42) 細田浩史(2016),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11 및 제227조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처 관리에 관한 체제 정비 의무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받는다는 것임

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설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위와 같은 감독지침상 모집 관련 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일본생명보험협회는 「모집 관련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募集関連行為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을 마련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이 제3자에게 모집 관련 행위를 위탁하는 경우에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은 모집 관련 행위를 위탁한 제3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탁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이 모집 관련 행위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보험모집인이 적절한 위탁처 관리를 실시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 자신이 모집 관련 행위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스스로 적절한 위탁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모집 관련 행위 종사자에 의해 보험 모집이나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 규제의 잠탈로 이어지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탁처가 행하는 모집 관련 행위 상황과 관련하여 위탁 시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적절하게 위탁처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비교사이트 위탁과 관련해서는 위탁처가 행하는 표시가 보험 모집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만약 위탁처가 부적절한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처에게 내용을 수정 또는 제거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위탁처가 자체적인 취재 등에 의거하여 견해를 표시하는 경우 그러한 표시와 보험회사가 행하는 표시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2. 미국

가. 보험 모집 행위

미국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이하 “NAIC”라 함)의 「보험모집인 면허 모델법」(Producer Licensing Model Act, 이하 “NAIC 모델법”이라 함)에 의하면, 보험을 판매(Sell)하거나 판매권유(Solicit)하거나 교섭

(Negotiate)하기 위해서는 면허(License)가 필요하며,⁴³⁾ 이들을 보험모집인(Insurance producer)이라 칭한다.⁴⁴⁾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은 보험 모집에 관한 면허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보험의 판매, 판매권유 또는 교섭에 대한 수수료·서비스 비용·중개 비용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며, 대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보험의 판매, 판매권유 또는 교섭에 대한 수수료·서비스 비용·중개 비용 등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된다.⁴⁵⁾ 한편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은 해당 주 안에서 보험의 판매, 판매권유 또는 교섭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가의 지급이 각 주의 관련 법규(예컨대 리베이트 금지 조항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수수료·서비스 비용·중개 비용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⁴⁶⁾

NAIC 모델법상 보험의 판매(Sell)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고 보험 계약을 교환하는 것’(Exchange a contract of insurance by any means, for money or its equivalent, on behalf of an insurance company)을 의미한다.⁴⁷⁾ 보험의 판매권유(Solicit)에 대해서는 ‘보험의 판매를 시도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에 청약하도록 요청 또는 설득하는 행위’(Attempting to sell insurance or asking or urging a person to apply for a particular kind of insurance from a particular company)로 정의하고 있으며,⁴⁸⁾ 보험의 교섭(Negotiate)에 대해서는 ‘특정 보험계약의 급부나 계약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가망고객과 직접 상의하거나 그들에게 직접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만 해당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보험을 판매하거나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을 조달해오는 경우’(Conferring directly with or offering advice directly to a purchaser or prospective purchaser of a particular contract of insurance concerning any of the

43) Section 3

44) Section 2. D

45) Section 13. A 및 13. B

46) Section 13. D

47) Section 2. M

48) Section 2. N

substantive benefits, terms or conditions of the contract, provided that the person engaged in that act either sells insurance or obtains insurance from insurers for purchasers)라고 정의하고 있다.⁴⁹⁾

한편 NAIC 모델법에서는 보험모집인 면허 요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들 (Exceptions to Licensing)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보험 판매 권유의 의도 없이 단순히 광고만 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험모집인으로서의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⁵⁰⁾

모집 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NAIC에서는 「보험모집인 면허 모델법 실무 지침」 (Implementation Guidelines of the Producer Licensing Model Act)⁵¹⁾을 마련하여, 보험모집인 면허가 필요한 모집 행위와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사무 행위(Clerical acts)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 NAIC 실무 지침상 모집 행위 구분

행위	모집에 해당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판매권유(Solicit)		
브로셔 및 기타 일반적인 정보 제공 행위(계약 조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
잠재적 또는 현재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 가이드, 보험 지원서, 담보 범위 선택 양식 또는 기타 유사한 양식을 배포하는 행위		√
보험모집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하고 기록하는 행위		√
보험모집인과의 상담 일정을 잡는 행위		√
발표·출판된 목록 또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요율을 참조하여 요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49) Section 2. K

50) Section 4. B(5). 한편 NAIC 모델법은 광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51) 2000. 8. 27

〈표 IV-3〉 계속

행위	모집에 해당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교섭(Negotiate)		
보험모집인의 검토 완료에 필수적인 사실 정보를 얻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잠재적 보험계약자와 의사소통하는 행위		v
담보 범위에 대해 설명, 논의 또는 해석하는 행위, 위험 노출 또는 보험 증권에 대해 분석하는 행위, 담보 범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천하는 행위	v	
잠재적 보험계약자의 연령, 건강 또는 기타 위험 관련 조건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행위	v	
잠재적 보험계약자가 특정 보험을 구매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언, 권고 또는 충고하는 행위	v	
판매(Sell)		
인가된 보험모집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가입 요청 수령 또는 보험회사 또는 인가된 보험모집인의 감독하에 개발·유지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가입 요청 수령 행위		v
신청자 또는 보험계약자 정보 수령 및 기록, 보험모집인 지침에 따른 검토를 위한 보험계약 신청서 준비 행위		v
신용기관, 차량등록사업소, 기타 보험 대리점 및 회사로부터 언더라이팅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		v
보험사 또는 인가된 보험모집인이 고용한 언더라이터로서 인가된 보험모집인이 송부한 신청서를 수령하는 즉시 언더라이팅 검사 및 조사 시 확실한 회계 또는 손실 관리에 관련된 정보의 요청 및 검토, 제출된 신청서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신체검사 결과 요청 및 검토, 신청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정보 요청 및 검토, 신청자의 보험회사 언더라이팅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에게 보험증권 메일 발송 행위		v
요청한 담보 범위가 확약 또는 명시되어 있거나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행위	v	
담보를 확약하는 행위	v	
신청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정보 수령 및 기록, 보험모집인의 검토 및 서명을 위한 보험모집인의 지침에 따른 바인더, 확인서, 배서, 신분증 또는 보험증권 등 제반 준비 행위		v
바인더, 배서 또는 기존 보험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록된 장소에서의 보험료 수령 행위		v
보험 증서, 배서, 바인더, 확약서,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의 발급 행위	발급 행위가 단순한 물리적 전달 행위인지 아니면 보험증권의 발효 행위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됨	

〈표 IV-3〉 계속

행위	모집에 해당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Servicing of Existing Policyholders)		
피보험자의 기존 보험 증권에 대한 추가 또는 삭제 요청의 수련 및 기록, 적절한 배서 준비 또는 변경 작업 행위		√ (요청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효율적 제공 가능)
보험 증권에 표기된 피보험자의 담보범위에 대한 정보 제공 행위		√
유지 중인 보험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사항(차량, 재산, 운전자)을 보고하는 전화를 수신하는 행위		√
메일 수신, 사무실 서류 정리 및 청구서 발송 행위		√

자료: NAIC(2000. 8. 27), "Implementation Guidelines of the Producer Licensing Model Act"

뉴욕주 보험국에서도 웹사이트를 이용한 보험의 광고, 소개 및 모집(판매권유)의 구분에 대해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⁵²⁾

이에 의하면 웹사이트에서 단지 보험 상품에 대한 광고(Advertisements)를 포함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어떠한 광고 또는 웹사이트가 보험 상품에 대한 추천(Recommendation)이나 지지(Endorsement), 프로모션(Promotion)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그러한 형태에 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광고나 웹사이트에서 보험 모집이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하더라도, 모집이 아닌 것으로서 허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 광고의 경우 보험모집인 면허가 없는 자도 제공할 수 있으며, 광고에 대한 대가를 해당 광고의 결과 체결된 보험 실적에 따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민약 어떠한 광고 또는 웹사이트가 보험 상품에 대한 추천, 지지 또는 프로모션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그러한 형태에 의하는 경우에는, 뉴욕주 보험국에 의하면 이는 단순한 광고는 아니며 소개(Referrals)에 해당한다고 본다. 소개의 경우에도 보험 모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 면허가 없는 자가 보험모집인에게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그와 같이 소개를 함에 있어 특정 보험 상품의 계

52) State of New York Insurance Department(2001. 2. 1)

약 조건에 대하여 논의해서는 안 되며, 소개비는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⁵³⁾ 이와 관련하여, 단지 고객의 이름 및 정보가 기재된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소개가 아니며 그에 대한 대가는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판매권유(Solicitations)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제안하는 긍정적인 행동(Affirmative act)으로서 소개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파악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소개비 관련 규제

앞서 살핀바와 같이 NAIC 모델법에서는 보험의 판매, 판매권유 또는 교섭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이 그에 대하여 수수료·서비스 비용·증개 비용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⁴⁾ 이러한 NAIC 모델법 조항을 수용한 주들에서는 보험모집인이 모집 자격 없는 자에게, 해당 모집 자격 없는 자가 보험 모집에 이르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모집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나누어주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이른바 Commission-sharing).⁵⁵⁾ 모집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Commission-sharing의 경우 모집 자격 없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도 허용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이 모집 자격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소개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는 주들도 있다. 이러한 주에서는 소개비를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연동하도록 산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즉 소개비를 보험계약 체결 건수가 아니라 소개 건수(실제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53) 뉴욕주의 경우 소개비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서는 나.항에서 후술함

54) 다만 그러한 대가의 지급이 각 주의 관련 법규(예: 리베이트 금지 조항 등)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55) Kevin G. Fitzgerald et al.(2012)

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거나 또는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⁵⁶⁾

예를 들어 뉴욕주 보험법에서는,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이 모집 자격 없는 자에게 보험 모집(판매, 판매권유 또는 교섭)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다만 어떠한 사람을 모집 자격 있는 보험모집인에게 소개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소개 행위가 특정 보험 상품의 계약 조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지 않고 또한 해당 소개 행위에 대한 대가가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기초하여 산정되지 않는 한, 보험 모집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⁷⁾ 위 조항에 의하면 모집의 정도에 이르지 않고 특정 보험 상품의 계약 조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소개 행위의 경우에도, 그 소개에 대한 대가를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은 금지되는 셈이다.⁵⁸⁾

델라웨어 주에서도 소개비 지급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델라웨어 주 보험법에 의하면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은 모집 자격 없는 자에게 보험 모집(판매, 판매권유 또는 교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보험 모집(판매, 판매권유 또는

56) Kevin G. Fitzgerald et al.(2012)

57) New York Consolidated Laws, Insurance Law, Section 2114(Life, Accident and Health Insurance Agents; Commissions) (a)(4)

“Services of the kind specified in this subsection shall not include the referral of a person to a licensed insurance agent or broker that does not include a discussion of specific insurance policy terms and conditions and where the compensation for referral is not based upon the purchase of insurance by such person”

Section 2115(Property/casualty Insurance Agents; Commissions) (a)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cting as insurance agent shall not include the referral of a person to a licensed insurance agent or broker that does not include a discussion of specific insurance policy terms and conditions and where the compensation for referral is not based upon the purchase of insurance by such person.”

Section 2116(Insurance Brokers; Commiss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cting as insurance broker” shall not include the referral of a person to a licensed insurance agent or broker that does not include a discussion of specific insurance policy terms and conditions and where the compensation for referral is not based upon the purchase of insurance by such person.”

58) 한편,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개비가 아니라 단순한 광고에 대한 대가나 단순히 고객 정보 리스트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State of New York Insurance Department(2001. 2. 1)

교섭)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서비스 비용·중개 비용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개 행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모집 자격 없는 자가 특정 보험 상품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 논의한다거나 보험에 대해 의견 또는 조언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고객 또는 잠재고객을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에게 소개하는 경우 그러한 소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다만 해당 소개비는 ① 명목상의 작은 금액, 1회성 지급, 소개 건당 고정금액이어야 하고 ② 고객 또는 잠재고객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연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⁵⁹⁾

3. 영국

가. 규제대상행위로서의 보험 모집 등의 행위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은 금융업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규제대상행위(Regulated activities)로 정하고 있으며 영국 내에서 규제대상행위를 영업으로(By way of business)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거나 인가 면제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⁶⁰⁾

규제대상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서는 하위 규정인 「규제대상행위에 대한 명령」

59) Delaware Insurance Code §1714 (g)

“An unlicensed person who refers a customer or potential customer to an insurer or insurance producer and who does not discuss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a policy or give opinions or advice regarding insurance may be compensated for the referral, if the compensation:

- (1) For each referral is:
 - a. Nominal;
 - b. On a 1-time basis; and
 - c. Fixed in amount by referral;
- (2) Does not depend on whether the customer or potential customer purchases the insurance; and
- (3) Is not contingent on the volume of insurance transacted.”

60)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Section 19 및 Section 22

(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⁶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보험 모집 등과 관련해서는 ① 대리인(Agent)으로서 보험계약을 취급(Dealing in)하는 행위, ② 보험계약에 대한 거래를 주선(Arranging deals)하는 행위, ③ 보험계약의 관리 및 이행을 지원(Assisting in the administration and performance)하는 행위, ④ 보험계약에 관하여 조언(Advising)하는 행위⁶²⁾ 및 ⑤ 위 행위들을 행하기로 약정하는 행위가 규제대상행위에 포함된다.⁶³⁾

아울러 영국 금융감독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라 함)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위 규제대상행위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The Perimeter Guidance manual, Chapter 5, 「Guidance on Insurance Mediation Activities」, 이하 “PERG”라 함).⁶⁴⁾

앞서 살펴본 대로 금융서비스시장법에 의하면 규제대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PERG에서는 우선 어떠한 경우에 영업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Business test).⁶⁵⁾ 이에 의하면 영업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61)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및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Regulated Activities) (Amendment) (No.2) Order 2003

62)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상으로는 위 ①,②,④ 행위와 관련하여 그 적용 대상이 투자성 보험계약에 한정되었음. 즉, “contractually based investments”인 경우에 한정되었고 이는 “rights under a qualifying contract of insurance”로 정의되었으며 “qualifying contract of insurance”란 재보험계약 및 순수보장성 보험계약이 아닌 장기 보험계약을 의미하였음. 그러나 개정된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Regulated Activities) (Amendment) (No.2) Order 2003에서는 그 적용 대상을 “contractually based investments”에서 “relevant investments”로 변경하였고, “relevant investments”는 “rights under a qualifying contract of insurance” 뿐만 아니라 “rights under any other contract of insurance”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그 적용 대상이 전체 보험계약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임

63) 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 Article 21, Article 25, Article 39A, Article 53 및 Article 64. 한편 규제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예외사유들(Exclusions)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64) 2018. 6. 기준 PERG는 EU의 “Insurance Mediation Directive”(IMD)를 인용하고 있음. 한편 EU는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판매 관련 규정을 기존의 IMD에서 “Insurance Distribution Directive”(IDD)로 대체하였고 IDD는 2018. 10.부터 적용될 예정임. IDD는 판매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모집인뿐만 아니라 보험가격비교사이트 등도 그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향후 IDD의 내용을 반영하여 PERG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음. 또한 PERG Chapter 8(Financial promotion and related activities)도 함께 검토할 필요도 있음

는 해당 행위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받는지, 만약 그렇다면 해당 행위를 영업으로서 수행하는 것인지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보상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며, 영업으로서 수행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With a degree of regularity)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For commercial purposes)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반적으로 어떠한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Direct financial benefit)을 받으려는 기대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단지 우정이나 이타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 보험 모집 관련 규제대상행위의 5가지 유형들 중에서는 특히 ②의 “보험계약에 대한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 및 ④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조언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규제대상행위인지 아니면 규제를 받지 않는 단순한 소개나 추천 등의 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⁶⁵⁾ 아래에서는 위 2가지 유형과 관련하여 PERG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보험계약에 대한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⁶⁷⁾

보험계약에 대한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에는 우선 실제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주선하는 행위가 있으며, 보험회사나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보험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상하는 행위, 보험계약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이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라도, 거래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주선하는 행위 자체도 규제대상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FCA는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 보험계약자가 청약

65) PERG, Article 5.4.1부터 Article 5.4.8

66) ①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행위”는 실제로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을 구입·판매·가입·인수하는 행위로서 비교적 그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고, ③의 “보험계약의 관리 및 이행을 지원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관리 및 이행을 지원하는 경우로서 주로 클레임 처리에 관련된 경우임. ⑤ 유형은 규제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약속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규제대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임

67) PERG, Article 5.6.1부터 Article 5.6.23까지의 내용 참고

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와 보험모집인에게 고객을 소개시켜 주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으며, 다만 소개와 관련해서, 일회적 소개(One-off introduction)에 그치는 경우라든지, 실제로 소개 받은 사람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단순히 독자적으로 조언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험모집인에게 소개를 해 주는 경우(예컨대 소개의 결과 체결된 보험계약 실적에 비례한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대상행위로서의 주선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보험 광고물을 수동적으로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행위(Mere passive display)도 주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FCA는 규제대상행위로서의 주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들(Exclusions)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우선, 보험 모집 행위가 아닌 본업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본업에 부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잠재적 보험계약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Provision of information on an incidental basis).⁶⁸⁾ 여기서 '부수하여'라는 것은 본업과 상호보완적이거나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즉 정보 제공 행위와 본업과의 사이에 본질적인 연관성(Inherent link)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아울러 해당 행위가 어떠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예를 들어 치과 의사가 치아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Means)만을 제공하는 행위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Arrangements enabling parties to communicate).⁶⁹⁾ 예컨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망 제공자가 단지 통신시설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면, 거래를 주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 예외사유는 단지 의사소통 수단만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외의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만약 출판인, 방송인,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단순히 수단을 제공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프

68) 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 Article 72 C 관련. 해당 예외사유는 보험계약자나 잠재적 보험계약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반대로 보험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만 예외사유로 하고 있어서 예컨대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 등은 해당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69) 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 Article 27 관련

로모션 촉진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본 예외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프로모션 촉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FCA는 (단순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모션의 결과로서 체결된 보험계약 실적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는지 여부가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⁷⁰⁾

주선의 유일한 목적이 자금 제공인 경우, 즉 어떠한 사람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료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규제대상행위로서의 주선 행위로는 보지 않는다(Arrangements for the provision of finance).⁷¹⁾

2) 보험계약에 관하여 조언하는 행위⁷²⁾

보험계약에 관하여 조언하는 행위가 규제대상행위가 되려면, 그러한 조언이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즉 특정한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언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 보험회사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일정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A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것”, “B보험회사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말 것”, “C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이나 또는 D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것”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의 상품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규제대상행위로서의 조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말 것”,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것”을 추천하는 정도로는 규제대상행위로서의 조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정보(Information)가 아닌 조언(Advice)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FCA에 의하면 조언이란 조언자 측의 어떤 의견이 개입되어 행동 방침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떠한 코멘트나 가치 판단도 없이 단지 사실이나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보험계약들의 조건을 설명하거나, 보험계약들의

70) PERG, Article 8.32.7

71) 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 Article 32 관련

72) PERG, Article 5.8.1부터 Article 5.8.26까지의 내용 참고

특징과 장점을 비교하는 것은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지만,⁷³⁾ 만약 이러한 정보 제공이 균형 잡히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선택적 기준에 의해(On a selected basis)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조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FCA의 입장이다.

한편 정기간행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뉴스 및 정보서비스와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언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⁷⁴⁾

3) 기타 주요 예외·면제사유

그 밖에도, 규제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자동차 이외의 상품(Non-motor goods) 또는 여행 관련 서비스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이른바 연계형 보험(Connected contract of insurance)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예외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연계형 보험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여야 한다.⁷⁵⁾

〈표 IV-4〉 연계형 보험의 조건

예외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연계형 보험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보험계약(Long-term insurance)이 아닐 것 • 총 보험기간이 5년 이하일 것 • 연간 보험료가 500유로 이하일 것 • 자동차 이외의 상품의 고장·손실·피해 또는 여행 리스크를 담보할 것 • 책임 담보(Liability risks)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⁷⁶⁾ • 본업으로 제공되는 자동차 이외의 상품 또는 여행 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일 것 • 보험 모집 활동을 통해 필요한 유일한 정보가 보험계약의 담보 내용에 관한 것일 것(예컨대 정형화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서 계약 조건이 개별 협상 대상이 아닌 경우)

자료: FCA(2018)

73) 조언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정보 제공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이 경우 보험 모집이 아닌 본업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본업에 부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잠재적 보험계약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사유(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 Article 72C)에 해당할 수 있음. 조언의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위 예외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74) 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 Article 54 관련

75) 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 Article 72B 관련

한편 금융서비스시장법은 선임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s)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규제대상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기업(Principal)과 선임대리인 사이에서 해당 선임대리인이 수행할 업무 및 준수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이 선임대리인의 영업 행위에 대한 책임을 서면으로 수락하는 경우 그에 따라 선임대리인이 해당 기업의 규제대상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임대리인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⁷⁷⁾ 일반보험계약(General insurance contract)과 순수보장성 보험계약(Pure protection contract)과 관련해서는 선임대리인은 앞서 살펴보았던 5가지 유형의 규제대상행위(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행위,⁷⁸⁾ 보험계약에 대한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관리 및 이행을 지원하는 행위, 보험계약에 관하여 조언하는 행위 및 위 행위들을 행하기로 약정하는 행위)를 모두 수행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행위는 선임대리인이 수행할 수 없다.⁷⁹⁾

4) 규제대상행위 분석표

PERG에서는 규제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한 후에 종합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규제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한 분석표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76) 다만 여행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에서 주된 담보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담보의 경우에는 제외함

77)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Section 39

78) 다만 순수보장성 보험계약 중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제외함

79) PERG, Article 5.13.4

〈표 IV-5〉 규제대상행위 분석 예시

행위	규제대상행위 해당 여부	근거
정보의 수동적 게시 행위 (대가를 지급받는지 여부 불문)	X	• 단순한 정보의 게시는 규제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고객에게 보험중개사·보험회사를 추천하고 보험중개사·보험회사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	O	• 원칙적으로 주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다만 모집 행위가 아닌 본업을 수행하면서 본업에 부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가 적용될 수 있음(Article 72 C 예외사유 ⁸⁰⁾)
보험중개사·보험회사에 고객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	O	•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고객 소개는 주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Article 72 C 예외사유는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고객과 보험의 필요성 또는 특정 종류의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행위, 또는 필요한 담보 수준에 대해 조언하는 행위	X	• 이것만으로는 주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충분치 않음 • 다만 해당 사안에서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선의 정도에 이르는지 따져 봐야 할 것임
특정 보험계약의 조건을 설명하거나 다수의 보험계약들의 조건을 비교하는 행위	O	• 원칙적으로 주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다만 모집 행위가 아닌 본업을 수행하면서 본업에 부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가 적용될 수 있음(Article 72 C 예외사유)
특정 보험계약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언하는 행위	O	• 보험계약에 관하여 조언하는 행위에 해당함
잠재적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기재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	O	• 주선 행위에 해당함 • 단순한 정보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Article 72 C 예외사유도 적용되지 않음
내용 확인 및 보험회사에의 전달을 위해 보험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를 수령하는 행위	O	• 주선 행위에 해당함 • 단순한 정보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Article 72 C 예외사유도 적용되지 않음
보험계약 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혹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협상하는 행위	O	• 주선 행위에 해당함 •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행위에도 해당함

자료: FCA(2018)

80) 이 표에서 Article은 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의 조항을 표시함

나. 가격비교사이트에 대한 판단

영국에서는 보험 시장에서 가격비교사이트(Price Comparison Websites)가 활발히 이용되어 왔으며,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한 보험 판매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발간하기도 하였다(Financial Services Authority,⁸¹⁾ 「Guidance on the: Selling of General Insurance Policies through Price Comparison Websites」).

위 지침에 의하면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가 규제대상행위인지를 점검하고 만약 그렇다면 적정하게 인가를 받거나 면제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자가 어떠한 대가를 받고 보험 상품의 계약조건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고객이 그러한 정보에 따라 행동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행위로서의 주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격비교사이트에서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의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의 특징을 수동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의 조건들을 비교하는 경우, 판매 필터링을 위해 사전 질문지(Pre-purchasing questionnaire)를 작성⁸²⁾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자금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가격비교사이트 이용자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규제대상행위로서의 주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가격비교사이트에서 특정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행위로서의 조언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가격비교사이트에서 특정한 1개의 보험 상품의 이름이나 로고만을 게시하는 경우, 특정 보험 상품을 동일 범주에 속하는 다른 보험 상품들 중에서 “최고(Pick of the best)” 상품으로 추천하는 경우, 특정

81) 기존의 통합감독기구인 FSA이며, 2013년 4월 건전성감독기구인 PRA와 영업행위감독기구인 FCA로 분리되었음

82) 모집인이 고객에게 다수의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 특정한 보험 상품을 제안하기 위한 것임

보험 상품에 높은 별점을 주는 경우, 질문지가 보험 상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추천이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가격비교사이트가 특정 보험 상품의 장점에 관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조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소결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보험 모집 행위와, 보험 모집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 규제 대상으로서의 보험 모집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행위를 구분해내기 쉽지 않은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여서,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의 정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데, 금융청 감독지침에서 이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를 목적으로 한 보험 상품의 내용 설명, 보험계약 신청의 수령, 기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라는 네 가지 유형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집 관련 행위'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모집 관련 행위는 모집 자격 없는 자도 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만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은 모집 자격 없는 자에게 모집 관련 행위를 위탁함에 있어 모집 관련 행위 종사자가 모집 규제 등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청 감독지침에서는 보험 상품의 추천·설명 없이 단지 잠재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에게 제공할 뿐인 행위, 비교사이트 등에서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으로부터의 정보를 옮겨 신는 것에 그치는 행위를 모집 관련 행위의 예로 들고 있다.

미국 NAIC의 보험모집인 면허 모델법에 의하면 보험을 판매하거나 판매권유하거나 교섭하는 행위가 모집에 해당하며, 여기서 판매권유는 보험의 판매를 시도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에 청약하도록 요청 또는 설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NAIC는 또한 실무 지침을 통하여 보험모집인 면허가 필요한 모집 행

위와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사무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보험계약 조건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행위, 보험모집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하고 기록하는 행위, 서류 준비 행위 등은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편 모집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개 행위를 모집 자격 없는 자가 수행하는 경우에 그에게 지급하는 소개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뉴욕주 보험법에 의하면 모집의 정도에 이르지 않고 특정 보험 상품의 계약 조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소개 행위의 경우에도, 그 소개에 대한 대가를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영국 법규상으로는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행위, 보험계약에 대한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관리 및 이행을 지원하는 행위, 보험계약에 관하여 조언하는 행위 및 위 행위들을 약정하는 행위가 규제대상행위에 포함되며, FCA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위 규제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거래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주선하는 행위 자체가 규제대상행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규제대상행위에 포함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인에게 고객을 소개시켜 주는 행위,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잠재적 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 가격 비교사이트에서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의 링크를 제공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원칙적으로는 규제대상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영국에서는 이러한 규제대상행위를 영업으로서 수행하는 경우만을 규제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예외사유나 면제사유도 두고 있다.